#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03 발의연월일: 2022. 9. 2.

발 의 자:이만희·박성민·엄태영

유상범 • 이명수 • 이인선

정점식 • 조명희 • 최재형

한무경 • 허은아 의원

(11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1. 10. 19. 「새마을금고법」 일부개정(시행 2022. 4. 20.)에 따라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.

이에 「새마을금고법」상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도 농업 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「공공단체등 위 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에 의무위탁선거로 명시하여 선거운동 및 벌칙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,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의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 및 제24조제3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호가목 중 "중앙회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"을 "중앙회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중소기업중앙회,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와 기업중앙회,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"을 "중소기업중앙회 및"으로 하며, 같은 조제7호 중 "말한다"를 "말하고, "동시이사장선거"란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를 말한다"로 한다.

제8조제1호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 장선거·동시이사장선거"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중 "조합장선거(이하 "조합장선거"라 한다)"를 "조합장선거(이하 "조합장선거"라 한다) 및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이사장선거(이하 "이사장선거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조합장선거"를 "제1호에 따른 선거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

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·동시이사장선거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단서 중 "조합장선거"를 "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"로, "조합으로부터"를 "조합 또는 금고로부터"로 한다. 제24조제3항제1호 중 "조합장선거"를 "조합장선거와 「새마을금고법」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조합장선거"를 "조합장선거와 「새마을금고법」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"을 "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새마을금고법」 "으로, "조합장선거"를 "조합장선거와 「새마을금고법」 및 「새마을금고법」 "으로, "조합장선거"를 "조합장선거와 「새마을금고법」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"로 한다.

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"조합장선거"를 "조합장선거·이사장선거"로, "조합운영"을 "조합 또는 금고운영"으로 한다.

제35조제5항 중 "조합장·중앙회장과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장"을 "조합장·중앙회장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장 및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이사장·중앙회장"으로 한다.

제36조 중 "조합·중앙회 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"을 "조합 ·중앙회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또는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· 중앙회"로 한다.

제41조의 제목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·동시이사장선거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조합과"를 "조합 또는 금고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조합장선거"를 "조합장선거 또는 2개 이상 이사장선거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"조합과"를 "조합 또는 금고와"로 한다.

제44조제1항제1호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·동시이사 장선거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제1호에 따른 선거"로 한다.

제45조제5항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·동시이사장선 거"로 한다.

제53조의 제목 중 "조합장선거"를 "조합장선거·이사장선거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"로 "동시조합장선거"로 "동시조합장선거"로, "조합장선거(이하 이 조에서 "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"라 한다)"를 "조합장선거·이사장선거(이하이 조에서 "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"이라 한다)"라 하며,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"조합장선거"를 "조합장선거·이사장선거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조합"을 "조합 또는 금고"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조합과"를 "조합 또는 금고와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

"조합과"를 "조합 또는 금고와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"를 "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"으로, "조합과"를 "조합 또는 금고와"로 한다.

제78조제2항 중 "동시조합장선거"를 "동시조합장선거·동시이사장선 거"로, "조합과"를 "조합 또는 금고와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의 의무위 탁에 관한 적용례)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된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이 사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공공단체등"이란 다음 각	1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단체를 말한다.	<u>.</u>
가. 「농업협동조합법」,	7}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	
따른 조합과 <u>중앙회 및</u>	<u>중앙회,</u> 「산
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	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
하 <u></u> 보	및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
	른 금고와 중앙회
나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	나
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,	<u>중소기업중앙회</u>
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	<u>및</u>
금고와 중앙회 및 「도시	
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	
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	
원회	
다. • 라. (생 략)	다. • 라. (현행과 같음)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7. "동시조합장선거"란 「농업	7
협동조합법」, 「수산업협동	
조합법」 및 「산림조합법」	

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 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한다.

### 8. (생략)

- 제8조(선거관리의 위탁신청) 공공 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 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 한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선거, 보궐선거, 위탁단체의 설립·분 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 청하여야 한다.
  - 1. 의무위탁선거: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. 이경우 <u>동시조합장선거</u>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.

말하고, "동시이사장선거"란
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라 관
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
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
이사장선거를 말한다.
8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선거관리의 위탁신청)
1
,
동시조합장선거 및 동
시이사장선거
··

2. (생 략)
제10조(공정선거지원단) ① 관할 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의예방 및 감시·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실시구역·선거인수,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수 있다. 다만,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

1. · 2. (생략)

을 둔다.

- ②·③ (생 략)
- 제13조(선거기간) ① 선거별 선거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

- 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산 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 합법」에 따른 <u>조합장선거</u> (이하 "조합장선거"라 한다): 14일
- 2. <u>조합장선거</u> 외의 위탁선거: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

2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공정선거지원단) ①
<u>동시조합장선거·동시</u>
<u>이사장선거</u>
1.・2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선거기간) ①
1
(이하 "조합장선거"라 한다)
및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
이사장선거(이하 "이사장선
<u>거"라 한다)</u>
2. 제1호에 따른 선거

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② (생 략)

- 제14조(선거일) ① <u>동시조합장선</u> <u>거</u>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 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 째 수요일로 한다.
  - ② <u>동시조합장선거</u> 외의 위탁 선거의 선거일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 하는 날로 한다.
  - ③ ~ ⑤ (생 략)
  - ⑥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동시</u>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한 것으로 본다.
- 제15조(선거인명부의 작성 등) ①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확정일을 정하고,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여야한다. 다만,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하며,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

② (현행과 같음) 제14조(선거일) ① <u>동시조합장선</u> <u>거 및 동시이사장선거</u>
 ② 동시조합장선거·동시이사 <u>장선거</u>
<u>동시</u> 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
<u>조합장선거 및 이사</u> <u>장선거</u>

- 일 전 10일에 확정된다.
- ② (생략)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<u>동시조</u> 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 탁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・확정하여 야 하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해당 <u>조합으로부터</u>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④ (생략)
- 제24조(선거운동의 주체·기간· 저 방법) ①·② (생 략)
  -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5조 제5항제1호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46조제3항제1호 및 「산림조합법」 제3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 장선거: 제25조부터 제30조까

,
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동시조</u>
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
<u></u> 조합 또는 금고
로부터
④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선거운동의 주체・기간・
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
1
조합
장선거와 「새마을금고법」

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

- 2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5조 제5항제1호, 「수산업협동조 합법」 제46조제3항제1호 및 「산림조합법」 제3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 거: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
- 3.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산 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앙 회장선거,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5조제5항제2호 및 「수산 업협동조합법」 제46조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: 제25조 •제28조•제29조•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 (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 회장선거에 한정한다)

제30조의2(선거일 후보자 소개 제3 및 소견발표) ① 제24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

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
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
<u> 장선거</u>
2
<u>조합장선</u>
거와 「새마을금고법」 제18
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
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
3 <u>「수산</u>
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새마을
금고법
조합장선거와 「새
마을금고법」 제18조제5항
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에서
선출하는 이사장선거
30조의2(선거일 후보자 소개
및 소견발표) ①
<u>조합장</u>

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투표관리관등"이라 한다)은 선 거일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선 투표일(제24조제3항제3호에 따 른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) 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 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 최되는 장소(이하 이 조에서 "투표소등"이라 한다)에서 선거 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 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 금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 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 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 하여야 한다.

### ② ~ ⑤ (생 략)

- 제35조(기부행위제한) ① ~ ④ 저 (생 략)
  - ⑤ 「농업협동조합법」,「수산 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<u>조합장</u> ·중앙회장과 「산림조합법」 에 따른 <u>조합장</u>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.

<u>선거ㆍ이사장선거</u>
조합 또는 금고운영
,
<u>.</u>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∥35조(기부행위제한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⑤
<u>조합장</u>
• 중앙회장, 「산림조합법」에
따른 조합장 및 「새마을금고
법」에 따른 이사장・중앙회장

제36조(조합장 등의 축의・부의 금품 제공제한) 「농업협동조 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에 따른 조합・중앙회 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(이하 이 조에서 "조합등"이라 한다)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 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•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 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 여야 하며, 해당 조합등의 대표 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 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.

제41조(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) ① 동시조합장선 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 회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·면 [「지방자치법」 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명칭과 구역)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

제36조(조합장 등의 축의・부의
금품 제공제한)
<u>조합·중앙회, 「산림</u>
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또는
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
<u>· 중앙회</u>
제41조( <u>동시조합장선거·동시이</u>
<u>사장선거</u> 의 투표소의 설치 등)
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
<u>이사장선거</u>

말한다]·동(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)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동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<u>동시조합장선거</u>에서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있다.
- ③ (생략)
-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 <u>조합장선거</u>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 투표하는 데 지 장이 없도록 하고,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관할위원회는 섬 또는 산간 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 운 선거인에게는 그 의결로 거 소투표, 순회투표, 인터넷투표

<u>조합 또는 금고와</u>
②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
이사장선거
③ (현행과 같음)
<b>4</b>
조합장선거 또는 2개 이상
조합장선거 또는 2개 이상
<u>조합장선거 또는 2개 이상</u> 이사장선거
<u>조합장선거 또는 2개 이상</u> 이사장선거
<u>조합장선거 또는 2개 이상</u> 이사장선거

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<u>조합과</u>협의하여야 한다.

### ⑥ (생략)

- 제44조(투표시간) ① 선거별 투표시간은 다음과 같다.
  - 동시조합장선거: 오전 7시부
     터 오후 5시까지
  - 2. <u>동시조합장선거</u> 외의 위탁선 거: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
     ② (생 략)
- 제45조(투표·개표의 참관) ① ~
  - ① (생 략)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동시조</u> 참가서기의 투표기계의 후표

합장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투표 소마다 12명으로 하며, 후보자 수가 12명을 넘는 경우에는 후 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천에 따라 12명을 지정하 고, 후보자수가 12명에 미달하 되 후보자가 선정·신고한 인 원수가 12명을 넘는 때에는 후

는 금고와
⑥ (현행과 같음)
제44조(투표시간) ①
·.
1. 동시조합장선거 • 동시이사장
<u>선거</u>
2. 제1호에 따른 선거
② (현행과 같음)
제45조(투표·개표의 참관) ① ~
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동시조</u>
합장선거·동시이사장선거

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.

# ⑥ (생 략)

- 제53조(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 호장선거에 관한 특례) ① 동 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(이하 이 조에서 "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"라 한다)의 선거인명부 작성・확정, 투표 및 개표에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 - 1.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<u>조</u> 합장선거에서는 제15조·제16 조 및 제17조에 따른 "선거인 명부"를 각각 "대의원명부"로 본다. 다만, 제15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- 2. (생략)
  - 3.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
     해당 조합의 선거인은 제2호
     에 따른 투표소에서 투표하여
     야 한다.
  - 4. 제44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

하고 투표시간은 관할위원회 가 해당 <u>조합과</u> 협의하여 정 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 시까지로 한다.

- 5. 결선투표는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일에 실시하고, 결선투표시간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정한다.
- 6. (생략)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 원회는 <u>총회</u> 등에서 선출하는 <u>조합장선거</u>의 재선거, 보궐선 거, 설립·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투표 및 개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<u>조합과</u>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78조(선거관리경비) ① (생략)
  - ② <u>동시조합장선거</u>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<u>조합과</u> 그 중앙회 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.
  - ③ ~ ⑦ (생 략)

<u>조합 또는 금고와</u>
 5
o. 
<u>조합 또는 금고와</u>
 6. (현행과 같음) ②
<u>총회 등에서 선출하는</u> 조합장선거 등
<u>ユ 省 8 7世 7  </u>
<u></u> 조합 또는
<u>금고와</u>
같음) ② <u>동시조합장선거·동시이사</u>
<u>장선거</u> <u>조합 또는 금고와</u> -
 ③ ~ ⑦ (현행과 같음)